

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. 7. 3 선고 2024가단1358 판결 [부당이득금반환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1. B

2. C

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병일

변 론 종 결 2024. 6. 12.

판 결 선 고 2024. 7. 3.

주 문

1.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
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원고에게, 피고 B은 32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. 5. 20.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 연 5%,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, 피고 C은 피고 B과 공동하여 위 32,000,000원 중 23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. 5. 20.부터 이 사건 소장

부분 송달일까지 연 5%,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원고의 주장

원고는 2006. 9. D 주식회사에 근무하면서 급여 등을 관리하기 위해 동생인 피고 B 명의로 E은행 통장 1개(이하 ‘이 사건 통장’이라 한다)를 발급하여 이를 위 피고에게 보관시켰다. 그런데 피고 B은 이 사건 통장을 보관하던 중 임의로 2009. 8. 17. 5,000,000원, 1,000,000원, 1,000,000원, 1,000,000원, 2009. 8. 18. 1,000,000원 합계 9,000,000원을 출금하여 위 돈을 횡령하였다. 또한 피고 B은 언니인 피고 C와 공모하여 임의로 이 사건 통장에서 피고 C 명의 계좌로 2009. 8. 18. 1,000,000원, 2010. 3. 15. 5,000,000원, 5,000,000원, 2011. 5. 19. 6,000,000원, 6,000,000원 합계 23,000,000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위 돈을 횡령하였다.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횡령행위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내지 부당이득반환으로 피고 B은 32,000,000원, 피고 C은 위 피고와 공동하여 23,000,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2. 판단

가.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더라도, 이 사건 통장을 피고 B이 소지하고 있었다거나, 피고 B이 단독으로 내지 피고 C와 공모하여 위 통장에서 금원을 임의로 인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

나. 설령 피고들의 횡령사실이 인정된다고 보더라도, 원고가 주장하는 횡령행위가 이루어진 후 10년이 지나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사실은 역수상 명백한 바, 횡령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 내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. 이 부분 피고들의 시효 항변은 이유 있다.

3. 결론

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박남진